

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- 3539호

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일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2.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31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(2021.01.01. ~ 2021.01.14.)

나.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(☎02-2133-8398)
- 용 산 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(☎02-2199-7363)
- 도시계획과 (☎02-2199-7412)

다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이촌동, 서빙고동 일대	-	증) 853,744.4	853,744.4	-	-

2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.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■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특별계획구역①	이촌동 415번지 일원	-	증) 27,629.5	27,629.5	
신설	특별계획구역②	이촌동 399-1번지 일원	-	증) 7,437.0	7,437.0	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특별계획구역③	이촌동 404번지 일원	-	증) 60,998.0	60,998.0	
신설	특별계획구역④	이촌동 412번지 일원	-	증) 27,572.0	27,572.0	
신설	특별계획구역⑤	이촌동 402번지 일원	-	증) 31,820.3	31,820.3	
신설	특별계획구역⑥	이촌동 418번지 일원	-	증) 13,298.0	13,298.0	
신설	특별계획구역⑦	이촌동 430번지 일원	-	증) 48,557.4	48,557.4	
신설	특별계획구역⑧	이촌동 300-157번지 일원	-	증) 84,096.8	84,096.8	
신설	특별계획구역⑨	이촌동 300-301번지 일원	-	증) 17,191.1	17,191.1	
신설	특별계획구역⑩	이촌동 426번지 일원	-	증) 15,104.3	15,104.3	
신설	특별계획구역⑪	이촌동 300-11번지 일원	-	증) 17,621.5	17,621.5	
신설	특별계획구역⑫	이촌동 301-170번지 일원	-	증) 16,369.0	16,369.0	
신설	특별계획구역⑬	서빙고동 241-21번지 일원	-	증) 114,256.0	114,256.0	

4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라. 관계도서 :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(안)
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마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‘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→서울소식→공고→도시계획(시행)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)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 02-2133-839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